

수원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20가단5621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위길복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영서

변론 종결2021. 4. 28.

판결 선고2021. 6. 3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토지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16. 2.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9,663,5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663,5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D 주식회사는 2003. 10. 29. C에게 5,077,386원을 변제기 2007. 4. 30., 이자 연 2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 위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고 한다)은 2011. 5. 20. E 주식회사에게, 2012. 5. 23. 주식회사 F에게, 2014. 8. 28. G 주식회사에게, 2016. 1. 26. 주식회사 H에게, 2016. 12. 16. 원고에게 각각 순차적으로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도 모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I이 2015. 9. 17. 사망함에 따라 그에 재산 중 3/15지분을 배우자인 피고가, 각 2/15 지분을 자녀인 C, J, K, L, M, N이 각각 공동상속 하였다.
 - 피고와 C, J, K, L, M, N은 2016. 2. 12. I의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고, 화성시 ○ 임야 2단3무보, P 임야 3,570㎡를 N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로써 C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
 - 피고는 이 사건 협의에 따라 2016. 2. 1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17. 1. 10. Q에게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토지를 2억 6,4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2. 10. Q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원고가 C을 상대로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전52243호)함에 따라 2017. 10. 16. 'C은 원고에게 19,005,593원 및 그중 5,137,998원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C이 2017. 10. 20.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7. 11. 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 2020. 9. 3.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은 19,663,547원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R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협의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C은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사실상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2/15의 상속지분을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협의는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 인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피고는, 이 사건 협의 당시 C의 채무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C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채권자인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에 따라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토지 중 C의 2/15 지분에 관한 이 사건 협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위 토지가 이 사건 협의 후 Q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2/15 지분에 관하여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고가 배상할 가액은 위 2/15 지분에 관한 가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채권액인 19,663,547원이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토지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16. 2. 12. 체결된 이 사건 협의를 19,663,5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금 19,663,5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곽용현

별지